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참 고 자 료</b>			• 생산적 금융 • 포용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
	<b>보도</b>	<b>2019. 4.25(목) 10시부터</b>	배포	2019.4.25(목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제도운영과장 강 석 민 (02-2100-1750)	<b>담 당 자</b>	고 철 수 사무관 (02-2100-1751)	

## 제 목 :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

-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'19.4.25 (목) 10시, 「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」에 참석하여 붙임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음.

### <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19.4.25(금) 10:00~11:30 /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
- 참석자 (약 30여명)
  - 금융정보분석원장, 제도운영과장, 정보분석팀장
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, 행정안전부, 중소벤처기업부, 관세청, 제주특별자치도, 금융감독원
  - 농업협동중앙회, 수산업협동중앙회, 신용협동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 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
- 주요 내용
  - '19년도 감독·검사 방향, 1분기 RBA평가결과 및 현장점검결과 주요 유의 사항,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) 상호평가 대비 등

<붙임> 2019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자료

2019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

#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자료

2019. 4. 25.

금 융 정 보 분 석 원

# I. '19년도 감독·검사 방향

## 1 '18년도 검사 실적

- FIU는 제도이행 감독을 통해 ML/TF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고,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운영 관리·지원
- FIU는 가상통화, 해외점포 관리강화, 국제제재 이행 등 핵심현안 대처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검사수탁기관의 검사품질 관리·지원
- 검사수탁기관은 8,721개 금융회사 중 5,271개(60.4%)를 검사했으며, 검사 당 조치건수는 0.43건
- 지적분야도 내부통제·고객확인·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제도전반에 대한 균형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

## 2 '19년도 감독·검사 방향

### 가. ML/TF 위험에 기반한 감독·검사 강화

- 국가위험평가보고서 및 FIU 위험평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위험기반 감독체계를 본격 운영

### 나. FIU의 지도감독 기능 확대

- FIU 지도점검을 그간의 상시감독·주요현안 위주 대응에서 업권별·제도분야별 취약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점검 실시로 전환
- 그간 상호금융 위주로 운영된 공동검사를 다양화하고, 특히 신규 제도편입 업권에 대한 FIU-금감원 공동검사 확대
- 검사수탁기관의 FIU 감독방향에 부합하는 검사운영 및 취약부문 점검강화를 위해 제도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을 지정하여 통보

\*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통해 분기별 검사결과 및 제도발전방안을 논의

분 야	‘19년도 중점 점검사항
내부통제	① 이사회·최고경영진 역할 및 책임 이행 여부
	② AML/CFT 독립적감사(자체감사) 수행의 충실성·전문성
	③ 자체 위험평가 운영·관리 및 FIU 보고의 적정성
	④ 해외점포 AML/CFT 이행 및 본점관리의 적정성
CDD	⑤ 국제제재 이행 관련 요주의인물 확인 등 수행현황
	⑥ 고위험 고객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이행 현황
STR	⑦ STR 보고품질 및 신속성 제고
	⑧ STR 추출기준(Rule)에 대한 지속적 검토·개선 여부
CTR	⑨ CTR 보고기간 준수 여부
	⑩ 정확도 개선 및 보고시스템 관리 여부

## II. 1분기 RBA(Risk-based Approach)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

### 1 위험 기반 감독 확립을 위한 조치 방안

#### 가. AML/CFT 위험관리수준 평가

- (평가 개요) 평가는,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시스템으로 보고한 약 130여개의 위험평가지표 자료를 기초로 실시되며,
  - 금융거래규모 등에 따른 ML/TF 위험노출도와, 내부통제 등에 따른 AML/CFT 위험관리도를 업권별·회사별로 상대적 순위를 부여
- (평가 결과) 업권별로는, 은행, 카드, 증권, 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이, 회사별로는 규모가 큰 회사가 위험관리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
  - 평가 결과가, 그간의 종합평가, 감독당국의 정성적 판단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어 감독·검사 참고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음

#### 나. 검사수탁기관 대상 요구사항 ('19년 감독검사계획 통보 시 반영)

- 검사수탁기관은 평가 결과 및 보고 자료를 검사 및 교육 시 참고 기준으로 적극 활용하고 그 실적을 관리할 필요
- 필요시 위험평가시스템의 기능 개선, 위험평가지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지표 개선 등 의견을 FIU에 제시하고, 검사매뉴얼 등은 정비
-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서면검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평가의 보완적인 수단으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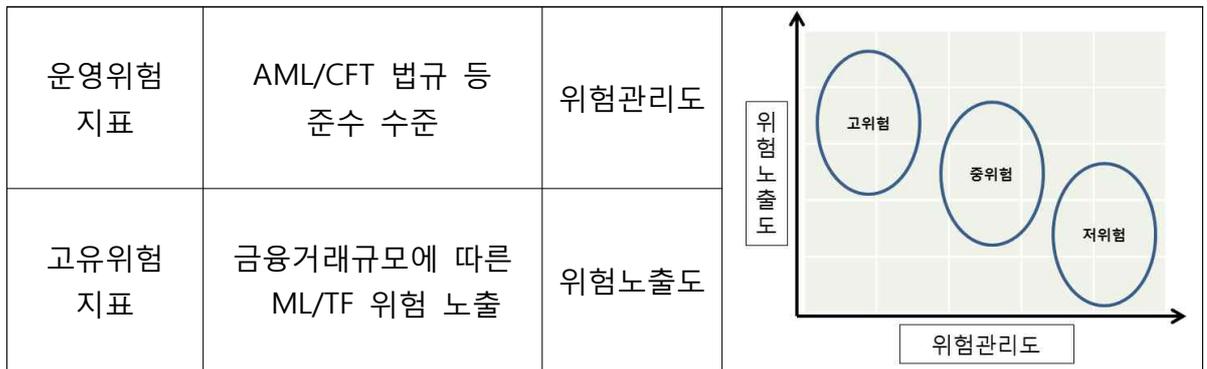
#### 다. 평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FIU 조치 예정 사항

- (정합성 제고 조치 등) 상반기 중 금융회사와 검사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평가지표의 정비 및 개발 추진
- (평가 운영) 국제기구(FATF, IMF)의 위험 기반 감독 권고사항을 준수하고, 감독 공백 제거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수단으로 정착시킬 예정

□ AML/CFT 위험관리수준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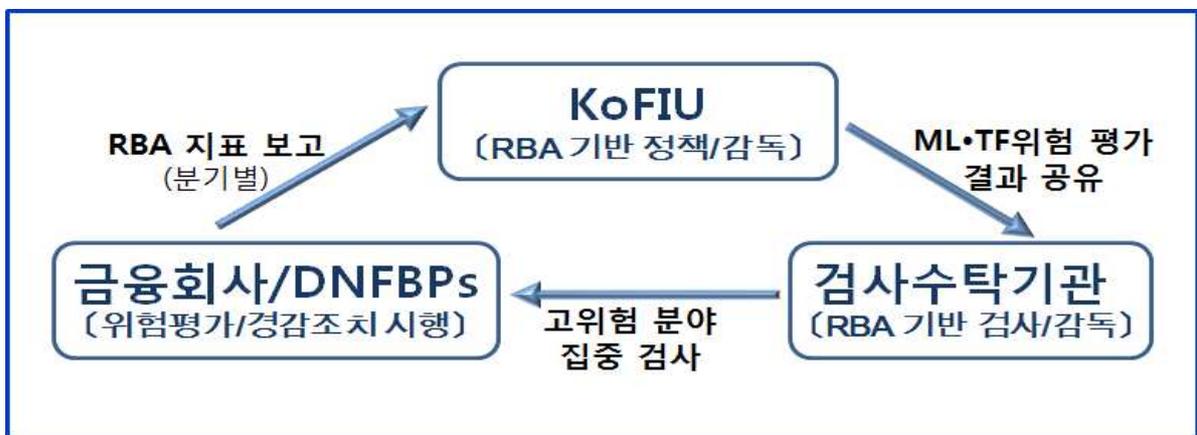
- (평가목적) 금융거래에 따른 ML/TF 위험 노출 정도, AML/CFT 조치 이행 수준 등을 평가하여 감독당국이 위험 기반 감독 등에 활용하기 위함
- (평가수단) AML/CFT 관련 법규 준수, 금융거래 등에 따른 위험 노출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위험평가지표를 26개 평가그룹별로 정의

< 위험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>



- (평가방법) 금융회사 등이 위험평가지표를 KoFIU의 위험평가시스템 (rba.kofiu.go.kr)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 평가
- (평가활용) 평가 결과는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되는 기관·업권 등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 기반 감독 수행

< 금융회사 등에 대한 위험평가 (RBA) 체계 >



□ 위험평가지표 보고 개요

- (보고목적) 금융회사 등의 AML/CFT 관련 위험관리수준 평가 목적
- (보고주기) 분기별(Quarterly)로 보고
  - \* ‘위험평가체계 구축·운영’은 의무화(‘19.7월 개정 특금법 시행) 되었으나, ‘보고의 무’는 향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시 명시 예정
- (보고방법) KoFIU의 위험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위험평가지표 자료 보고

< KoFIU의 위험평가시스템 개요 >

- (용도) 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위험평가지표를 보고 받는데 이용  
 ② 보고 받은 위험평가지표 관련 자료를 검사수탁기관과 공유  
 ③ RBA 관련 정보, AML/CFT 관련 정보 등을 금융회사 등에 전파 및 공유
- (운영) 위험평가시스템은 시행착오를 거쳐 2018년 11월부터 본격 운영
  - \*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금융회사 등을 위해 RBA 지침서와 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난 후 운영

- (평가결과)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등의 ML/TF 위험을 확인하여 위험 기반 감독을 수행하는 추가적인 중요한 수단

- (결과 해석) 평가 결과만으로 금융회사 등이 ML/TF 위험평가체계 등이 잘되어 있거나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유보\*
  - \* ① 금융회사별로 AML/CFT 및 RBA 이행 방식이 다를 수 있고,  
 ② 위험평가지표 자체 및 보고 자료의 오류로 지표 등이 지속 개선·변경될 여지가 있으며,  
 ③ 금융회사 등이 평가 결과를 명분으로 승인되지 않은 간소화된 AML/CFT 조치를 취할 우려 등을 감안

- (금융회사 피드백)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하여 AML/CFT 개선대책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결과 피드백
- (검사수탁기관 공유) 보고 지표, 보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ML/TF 위험이 높은 경우 검사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
- (감독, 교육 등 참고자료로 활용) 개별 지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독, 교육 계획 수립·시행에 참고

### 가. 카지노사업자(고위험고객군) 관리 및 STR 모니터링

- 카지노사업자는 업무규정에서 고위험 고객군으로 지정하고 있으나, 금융회사는 거래관계 중 위험에 상응하는 관리와 STR 모니터링 보고체계가 미흡

### 나. 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

- 고객확인의 경우 최초 고객확인 후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재이행주기 도래 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고객확인 업무이행에 철저 필요

### 다. 독립적감사 운영 관련

- AML/CFT 관련 매년 감사운영 및 실시 결과에 대한 이사회 결과 보고 등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으나,
  - 독립적감사 수행 인력(검사실 직원)에 대한 AML/CFT 전문교육은 편차가 크고 (60% 이하) 내부 교육도 2시간 미만에 불과해 독립적 감사 수행인력에 대한 AML/CFT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

### 라. 전담인력 운용 관련

- AML/CFT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직원의 전문성 및 인력 배치의 적정성 (관련 업무 수행 경력, 직위, 관련 교육 이수여부 및 평균 재직기간 등)을 종합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

### 마. 직원알기제도 운영 관련

- 직원알기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특히 자체 금융사고(횡령, 배임 등) 발생 시 직원알기제도가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점검·조치할 필요

### Ⅲ. FATF 상호평가 대비

#### 1 FATF 상호평가 개요

- (배경) 우리나라는 FATF 강령(Mandate)에 따라 '19.1월부터 '20.2월까지 자금세탁방지과 테러자금조달금지(AML/CFT)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받을 예정
  - \* FATF는 상호평가를 통하여 AML/CFT 금융·사법시스템의 투명성을 평가
- (평가항목) FATF는 자금세탁,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크게 5가지 부문에 대한 평가
  - 예방조치, 사법제도, 테러자금조달금지, 국제협력, 투명성 장치
- (평가결과) 3단계\*로 평가·후속점검을 받으며,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, 수출기업의 금융비용, 환거래 등에 영향
  - \* 정규 후속점검(점검주기 3년) / 강화된 후속점검(점검주기 1~1.5년) / 실무그룹 점검대상(점검주기 4개월)

#### 2 FATF 상호평가 주요 일정

- FATF 이행보고서(40개 권고사항, 11개 즉시성과) 제출 완료 : - '19. 3월
- FATF/APG 사무국의 수검자 교육 : - '19. 2월
- FATF 요구 금융기관 등 주요 체크리스트 QA작성 : '19. 3월 - 5월
- 금융회사 등 대상 상호평가 대응 워크숍 : '19. 5월
- FATF 현지실사 수검 : '19. 7월
- 상호평가 보고서 대응 : '19. 8월 - 12월
-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FATF 총회 토의 : '20. 2.16 - 21

#### 3 협조 및 당부사항

- 각 검사수탁기관은 FATF 상호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FIU와 공동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FATF 상호평가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 IV. 기타 상호토론

### 1 STR · CTR 보고 관련

#### □ ( STR · CTR 보고의무 이행 강화 )

○ CTR 보고기준금액 변경\*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점검 등 이행 철저

\* 2천만원 → 1천만원 이상, '19.7.1일 시행

○ STR 및 CTR 관련 법정 보고기한\* 이행 철저 당부

\* 특정금융정보법은 STR '지체없이', CTR '30일 이내' 보고토록 규정

#### □ ( STR 보고품질 제고 )

○ FIU는 STR 보고품질 제고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 및 관련 교육 강화 추진 중

○ 각 검사수탁기관은 필수 검사항목으로 STR 보고의 충실성을 반영하고, 미흡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 적용 당부

### 2 과태료 부과 관련

<시행령 상 주요 부과사유별 과태료 개별기준금액 예시>

주요 부과사유	종전 기준금액	시행령 개정안 (법률상 한도액)
STR/CTR보고 위반	1,000만원/800만원	<b>1,800만원/900~1000만원(3,000만원)</b> ※ 건별 부과를 통한 다액 부과가 가능한 점을 고려 한도액의 30~60%로 설정
내부통제의무 위반	-	<b>1억원 (1억원)</b> ※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핵심적인 사항인 점 등을 고려 법률상 최고한도액으로 설정
지시·검사의 거부·방해·기피	1,000만원	<b>1억원 (1억원)</b> ※ 타 금융법 입법례 및 중한 제재 필요성 감안

① (STR, CTR) 시스템 개·보수 등 전산오류로 다량의 건이 보고누락·지연된 경우

② (내부통제의무)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의 적정한 범위(기준)